고 성 군 보 건 소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
(의안번호 제435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10. 9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9. 25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9. 2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7. 10. 9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 :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 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코자함.

나. 주요골자 : "보건소법" 명칭조항을 "지역보건법" 명칭조항으로 개정 (안 제1조,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1995. 12. 29(법률 제5101호)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중 "보건소법" 명칭을 "지역보건법" 명칭으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노인복지타운 설치와 보건소와의 관련 여부는

● 답 : 노인복지타운 설치와 보건소와는 무관하며 단지 보건소이전시 노인복지타운 구역내 설치 예정일뿐임.

○ 문 : 검사는 어떤 검사인지

● 답 : 인체 위해 유무검사임.

5. 토 론 :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1997. 10. 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